

#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김원섭 의원 외 13인

#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섭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4. . .

발의자: 김원섭·김근한·김낙관·김민성  
김영태·김재우·박교상·신용하  
양진오·이정희·이지연·정지원  
추은희·허민근 의원(14인)

## 1. 제안이유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산업 트렌드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구미시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3. 조례안: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관광진흥법」 제48조, 제67조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

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부서검토: 낭만축제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붙임)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한 숙박업소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관내”를 “당일 관내 관광지 방문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으로 따로”를 “시장이”로 한다.

5. 기념품 및 구미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 지원

제10조제4호 중 “전시 홍보”를 “전시·홍보·판매”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시 소재 관광호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를 말한다.</p> <p>3. ~ 8. (생 략)</p> <p>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u>관내</u>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하는 경우</p> <p>2. ~ 6.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한 숙박업소를 말한다.</p> <p>3. ~ 8. (현행과 같음)</p> <p>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 ----- ----- ----- -----.</p> <p>1. ----- <u>당일</u> <u>관내 관광지 방문 또는</u> ----- -----</p> <p>2. ~ 6.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기념품 및 구미사랑상품권</p>

③ 그 밖에 지원의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5. (생략)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등 인센티브 지원

③ -----  
-----  
----- 시장이 -----  
-----.

제10조(업무)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전시·홍보·판매
5. (현행과 같음)

<삭제>

# 관계법령

##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 1.~2. (생략)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 가.~마. (생략)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사. 한옥체험업: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6. (생략)

② (생략)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8. (생 략)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5. (생 략)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다. (생 략)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의5. (생략)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6.~10. (생략)

#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낭만축제과

조 례 명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li><li>▪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li><li>▪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상품권 활성화 지원)</li></ul></li></ul>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li><li>○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li><li>○ 관광안내소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광기념품 판매업무 추가</li></ul></li></ul>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센티브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li></ul>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대효과 : 인센티브 지원 확대와 지역상품권 지원을 통해 관광 진흥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li><li>○ 소요예산 : 157,045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비용추계서 첨부</li></ul></li><li>○ 문 제 점 : 없음</li></ul>	

#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당일 및 개별관광객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예산 소요비용과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의 인센티브 예산 증액
- 관광안내소(기념품판매소) 내 근무자(3명)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등에 따른 재정 소요가 예상됨

###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 10. 4.)에 따라 보조인력 운영 관련 비용은 원가산정의 구성요소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기본으로 한다.
- 관광안내소 개소 및 운영이 2025년부터 예정이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으로 한다.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인센티브 지원보상금	6,000	30,000	30,000	30,000	30,000	126,000
관광안내소	58,000	127,045	130,856	134,781	138,824	589,506
합 계	64,000	157,045	160,856	164,781	168,824	715,506

#### ※ 관광안내소 비용추계 세부내용

- 1차년도 : 관광안내소 운영 인력운영비(민간위탁금)
- 2차년도 : 안내소 확대이전 및 관광기념품 판매업무 추가에 따른 인력증원  
 ☞ 2026년 이후 인건비 매년 인상을 3% 반영

구분	2024년	2025년
매장면적	8.39㎡	80.73㎡(*창고 62.98㎡ 별도)
인력운영	근무자 2명(격일제)	근무자 3명
운영내용	· 관광 안내 및 간행물 배부	· 관광 안내 및 간행물 배부 · 관광기념품 판매·진열 및 재고관리 · 기념품 판촉 및 이벤트 프로모션

#### 4. 채용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시비		64,000	157,045	160,856	164,781	168,824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낭만축제과 관광마케팅팀 김유진(☎054-480-2662)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관광안내소)

○ 202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합 계	127,045	
노 무 비	89,263	<급여,수당> • 27,466천원 × 3명 : 82,397  <퇴직금> • 2,288천원 × 3명 : 6,866
일 반 경 비	8,865	<4대보험료 등> • 2,955천원 × 3명 : 8,865
일 반 관 리 비	6,869	<노무비 + 경비의 7%> • (89,263천원 + 8,865천원) × 7% : 6,869
이 윤	10,499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약 10%> • (89,263천원+8,865천원+6,869천원) × 10% : 10,499
소 계	115,496	용역원가
부 가 가 치 세	11,549	용역원가의 10%

○ 202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천원)	산출내역
합 계	58,155	
노 무 비	40,450	<급여,수당> • 18,669천원 × 2명 : 37,338  <퇴직금> • 1,556천원 × 2명 : 3,112
일 반 경 비	4,467	<4대보험료 등> • 2,233.5천원 × 2명 : 4,467
일반관리비	3,144	<노무비 + 경비의 7%> • (40,450천원 + 4,467천원) × 7% : 3,144
이 윤	4,806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약 10%> • (40,450천원+4,467천원+3,144천원) × 10% : 4,806
소 계	52,868	용역원가
부가가치세	5,287	용역원가의 10%